

[제명 개정(의과대학 주임교수 임용규칙) 2006. 7. 25]

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주임교수 임용규칙

	제정	1993.	9.	1
	1차 개정	1995.	7.	1
	2차 개정	1996.	11.	1
	3차 개정	1999.	3.	1
	4차 개정	2000.	3.	1
	5차 개정	2002.	7.	30
	6차 개정	2003.	3.	1
	7차 개정	2004.	9.	1
	8차 개정	2006.	7.	25
	9차 개정	2012.	9.	26
	10차 개정	2017.	1.	24
	11차 개정	2017.	7.	18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각 교실 주임교수 및 각 학과 과장(이하 “주임교수”라 한다)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7.25. 2017.1.24>

제 2 조(임 기) ①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3.1, 2003.3.1, 2012.9.26>
 ② 임기 중 주임교수에게 유고가 있어 후임을 임명할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03.3.1, 개정 2012.9.26>
 ③ <삭제 2012. 9. 26>

제 3 조(직 무) ① 주임교수는 소속교실을 대표하며 교육,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교실의 제반 행정과 인력 및 자산을 관리, 운영한다. <개정 1995.7.1, 1999.3.1, 2000.3.1>
 ② 임상의학교실 주임교수는 병원 당해과의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. <개정 1995.7.1, 1999.3.1, 2000.3.1, 2002. 7. 30, 2003. 3. 1>

제 4 조(임용대상) 주임교수는 당해교실의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1999.3.1, 2000.3.1, 2002.7.30., 2003.3.1, 2017.7.18>

제 5 조(임용절차) ①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의 추천(임상의학교실은 병원장 경우 협조)에 의하여 의료원장이 임명한다. <신설 1999.3.1, 개정 2000.3.1, 2006.7.25>
 ② <삭제 2017.1.24.>
 ③ 학장은 추천과정에서 당해교실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. <신설 1999.3.1, 개정 2002.7.30, 2006.7.25>

제 6 조(심 사) 주임교수를 추천하거나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. <개정 2003.3.1>
 1. 인품 <개정 1999.3.1>
 2. 지도력 및 행정능력

- 3. 학술활동 및 학문적인 업적
- 4. 교육열의 및 학교 기여도
- 5. <삭제 1999. 3. 1>

제 7 조(주임교수의 해임) ① 주임교수는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, 적성 등의 사유로 현저한 문제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1999. 3. 1>
 ② 주임교수가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주임교수를 해임할 수 있다. <신설 2000.3.1, 개정 2003.3.1>

제 8 조(보칙)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4.9.1, 개정 2006.7.25. 2017.1.24>

부 칙
이 규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 및 제4조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원 초창기임을 감안하여
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된 사항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규정류관리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임 중인 의과대학 각 주임교수 및 각 학과 과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주임교수는 당해 주임교수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